KOSHA GUIDE

M - 180 - 2023

재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23. 8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·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지침임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

○ 개정자 :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김명관

- 제·개정 경과
- 2014년 11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23년 7월 기계안전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 규격 및 자료
- NSC, Industrial Safety Data Sheet, I-609 Reaf.90
- INDG-282: Safety at power-operated paper cutting guillotines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절 제103조(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)
-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3년 8월 24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<u>목 차</u>

1.	목적1
2.	적용범위1
3.	용어의 정의1
4.	재단기의 유해·위험요인2
5.	재단기의 방호조치2
5.1	가드2
5.2	덮개3
5.3	양수조작식 방호장치3
5.4	그 외 방호장치3
6.	재단기 작업 전 주의사항4
7.	재단기 작업 시 주의사항5
8.	칼날 교체 시 주의사항6
9.	교육 및 훈련7

재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재단기 사용, 작동 및 점검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섬유 또는 종이재단기를 사용, 작동 및 점검하는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스트로보스코픽 효과(Stroboscopic effect)"란 어떤 공간에 두 개의 사물이 떨어져 있을 때, 하나가 짧은 시간에 껐다 켜지고 짧은 지연 시간을 가진 후에, 다른 하나가 껐다 켜질 때 발생하는 운동의 착시를 말한다.
- (나) "방호(Safeguarding)"라 함은 가드, 관련장치 또는 안전작업절차 등을 이 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.
- (다) "가드(Guard)"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 벽으로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, 덮개, 스크린, 문, 울타리(방호울) 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.
- (라) "연동 가드(Interlocking guard)"라 함은 기계의 위험한 부분이 가드로 방호되어 가드가 닫혀야만 작동될 수 있고 가드가 열리면 정지명령이 주어지는 연동장치와 조합된 가드를 말한다. 단, 가드가 닫혔을 때 기계의 작동이 초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
KOSHA Guide M-180-2023

- (마) "양수조작식 방호장치(Two hands control)"라 함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수동조작버튼을 동시에 조작해야 기계의 작동이 개시되고 유지시키는 장치로 손으로 조작을 하는 작업자에 대한 방호기능을 하는 가동유지 (Hold-on) 조작장치를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재단기의 유해·위험요인

- (1) 작업자가 주름이 잡힌 소재의 가장자리를 펼 때 손이 재단기의 칼날 접촉 에 의한 절단 위험
- (2) 조정이나 수리 중에 작업자가 칼날 접촉에 의한 절단 위험
- (3) 기어, 벨트, 풀리 등의 동력전달부에 작업자가 말림 및 끼임에 의한 위험
- (4) 기계 주변 바닥에 기름, 분진, 보풀 등에 작업자가 미끄러짐에 의한 위험
- (5) 보풀이나 기름이 기계 내부나 주변 바닥 등에 방치되어 있어 점화원에 의해 화재 발생 위험
- (6) 작업자가 소재를 공급할 때 작동 중인 롤에 말림 및 끼임에 의한 위험

5. 재단기의 방호조치

절단헤드와 칼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
5.1 가드

(1) 가드는 칼날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 가드의 틈 사이에는 작업자의 손이나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시야를 가리지 않고, 먼지 등이 쌓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.

- (2) 모든 가드는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칼날이 작동 중에 이것이 젖혀지거나 제 거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 그리고 가드가 젖혀지거나 제거된 상태에서는 재단기 실린더도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.
- (3) 모든 칼날은 소재의 표면과 가드의 하단 사이가 일정한 거리(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높이)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.
- (4) 가드의 틈을 청소하기 위한 이동식 진공청소기가 구비되어야 한다. 보풀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기의 칼날 위에는 보풀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(5) 가드는 보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속부품으로 방호해야 하며, 가드의 아랫부분에는 경첩이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덮개가 있어서 기계를 멈추었을 때는 가드의 내부를 청소할 수 있어야 하고, 가드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있어야 한다.

5.2 덮개

(1) 모든 노출된 벨트, 풀리, 기어, 기타 동력전달장치들은 덮개를 부착해야 한다.

5.3 양수조작식 방호장치

- (1) 기기가 작동하기 전에 양쪽 버튼이 0.5초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.
- (2) 한쪽 제어가 해제되면, 양쪽 버튼이 해제되어야 하며,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 서는 재구동해야 한다.
- (3) 제어는 한 손으로 작동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.
- (4) 한쪽 또는 양쪽 제어장치 모두 해제될 경우, 기기는 멈추거나, 상사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.

5.4 그 외 방호장치

(1) 광전식 방호장치, 연동 가드 및 자동 손쳐내기식 방호장치(가드)를 사용할 때

체크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은 해당기기 관련 자료를 참고한다.

- (2) 칼날 드라이브에 장착된 제동장치가 부적합하다면, 손쳐내기식 방호장치(가 드)를 광전자식 방호장치로 변경시킬 수 없다.
- (3) 밀어내기식 방호장치(Body push guard)는 재단기에 장착된 밀어내기식 방호 장치는 더 이상 안전장치로 적합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. 일부 선진국에서는 밀어내기식 방호장치가 장착된 재단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.

6. 재단기 작업 전 주의사항

- (1) 스위치, 전선, 모터제어기 등의 전기설비는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.
- (2) 먼지가 많고 보풀로 가득한 공간에서 사용되는 모터는 완전히 차폐되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. 일반적인 개방형으로 스파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도모터는 먼지와 보풀이 거의 없는 곳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.
- (3) 재단작업에는 적절한 조명을 확보해야 한다.
- (4) 조명이 설치된 재단기 작업 시에 움직이는 물체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스트 로보스코픽 효과가 관측되면 조명 설치를 조정해야 한다.
- (5) 소재 재단 시 발생되는 분진이나 보풀에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기계 설비 주변은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6)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 작업자들이 이동 시 기계설비에 접촉하지 않도록 통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여야 하고, 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하여 야 하다.
- (7)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는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여 두고,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
- (8) 소재의 표면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건식화학소화기가 권장된다. 또한 이는 전기설비나 가연성 액체에도 사용될 수 있다. 이외의 소화기의 사용은 부적절하다.

- (9)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건물기둥이나 벽에 걸어두고, 소화기 위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(10)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.

7. 재단기 작업 시 주의사항

- (1) 작업자는 작업복이 기계 설비 등에 말리지 않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고, 반지 나 목걸이 등을 착용할 수 없다. 또한. 긴 머리는 모자를 착용하여 기계 설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2) 작업자는 재단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받고, 작업안전수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3) 접힌 면을 펼 때는 롤에 말릴 위험이 있으므로 전용 수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재단기를 수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방호울이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작업자는 주스위치에 시건조치를 취해야 한다. 작업 종료 후 안전장치를 재설치 한후 기계가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을 때까지 시건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. 각공장에는 기계의 시건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.
- (5) 재단기 안전 시스템에 대한 변경은 시스템의 복잡성 및 부적절한 변경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재단기 엔지니어,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.
- (6) 작업자는 매일 기계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, 필요 시 6개월마다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한다. 점검 후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.
- (7) 칼날 교체 후에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8) 체크리스트에는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란을 만들고 감독 자들은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 한다. 재단기가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,

작동을 중단하고 재단기 엔지니어의 검사를 받는다.

- (9) 다중 칼날이 사용될 때는 회전이 멈추고 스위치를 자물쇠로 잠글 때까지는 누구도 방책 뒤나 구획사이로 들어갈 수 없다.
- (10) 소재의 가장자리를 다듬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하거나 필요 시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실시한다.
- (11) 롤러를 점검하려면 작업자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롤러를 손으로 옮겨야 한다. 가죽이나 금속이 박힌 가죽장갑을 손에 착용하고 롤러를 돌려야 한다.
- (12) 기계의 청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, 시건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.
- (13) 청소하기 전에 롤러를 멈추고 잠근 후 브러시를 사용한다.
- (14) 지정된 작업자만이 안전노즐을 사용하여 압축공기로 기계를 청소해야 한다.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압축공기를 다른 근로자에게 분사하거나 자신의 옷에 먼지를 터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- (15) 윤활유 공급을 위해 롤러를 분리할 때는 먼저 기계를 멈추고 시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롤러에 윤활유를 공급할 때는 기름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- (16) 롤러나 칼날 브리지(Bridge)를 재단기에서 떼어낼 때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동식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이용하고, 손으로 작업할 때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.
- (17) 소재를 인력으로 취급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허리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재를 가능한 몸에 밀착하여 들어올리고, 올바른 중량물 취급 방법에 대하 여 작업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8. 칼날 교체 시 주의사항

(1) 칼날 교체는 위험함으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

KOSHA Guide M-180-2023

- 이 필요하다.
- (2) 재단기 제조업체의 안전지침은 안전 작업 절차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, 반 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다음과 내용을 포함한다.
- (가) 칼날 핸들 또는 슬라이드와 같은 장비 및 안전한 탈 부착을 위한 보조 장치
- (나) 안전한 이동 및 보관을 위한 고정 보드(Mounting board)
- (다) 칼날을 교체할 때 보조 작업자를 활용하는 것 등에 대한 절차 명시
- (3) 방호울타리 등을 사용하여 칼날 교체 시 다른 작업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.
- (4) 사업주는 칼날 교체에 필요한 제조업체에서 정한 공구, 장비 또는 기타 장치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(5) 작업 공간에는 불필요한 물품들이 치워져 있어야 하며, 칼날 블레이드를 불필요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도록 배치되어야 한다.
- (6) 칼날 교체에 필요한 공구(예를 들면, 칼날 캐리어 및 플라이휠용 크랭크 핸들 등)를 확인한다.

9. 교육 및 훈련

- (1) 재단기와 관련한 사고는 주로 사용이나 유지보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.
- (2) 모든 작업자들은 재단기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(3) 교육 및 훈련은 사업주에 의해 사내에서, 아니면 신뢰할 만한 외부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.
- (4)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.

KOSHA Guide M-180-2023

- (5) 감독자들은 신규 직원의 개선 사항을 모니터하며, 직원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작업 관행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.
- (6) 신규 및 중고 재단기 구입 시 확인사항은 관련 안전보건기술지침(새로운 기계의 구입에 관한 기술지침)을 참조한다.

안전보건기술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3. 8. 24.

○ 개정자 :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김명관

○ 개정사유 : 유사 주제 및 내용중복 기술지침 통폐합

- (M-3-2012)「종이재단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」폐지

- 주요 개정내용
 - "5. 재단기의 방호조치"의 방호장치 종류 및 내용 추가
 - "8. 칼날 교체 시 주의사항" 내용 추가
 - "9. 교육 및 훈련" 내용 추가